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세 세목조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폐지(안 제3조)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 부터 안 제22조의5)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
 - 농업소득세 : 현행 시세 조례 제41조 ~ 제51조
 - 사업소세 : 현행 시세 조례 제95조 ~ 제100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 경상북도 세정과-59(2010.1.6)호 시세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우편송달하는 경우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납세의무자)를 삭제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세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 : 3,000원

동 지역 : 4,5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신고 및 납부)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2조(수정신고납부)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삭제한다.

제2장에 제1절의2(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

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 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40조의2, 제40조의4 제1호 및 제2호 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장제4절(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787호 구미시세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세목) <u>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u> ① <u>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주민세</u> 2. <u>재산세</u> 3. <u>자동차세</u> 4. <u>주행세</u> 5. <u>농업소득세</u> 6. <u>담배소비세</u> 7. <u>도축세</u> ② <u>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도시계획세</u> 2. <u>사업소세</u>	제3조(세목) ① <u>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u> ② <u>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주민세</u> 2. <u>지방소득세</u> 3. <u>재산세</u> 4. <u>자동차세</u> 5. <u>주행세</u> 6. <u>담배소비세</u> 7. <u>도축세</u> ③ <u>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도시계획세</u> <u><삭 제></u>	○ 지방소득세 신설 및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세목 조정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u>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u> <u>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u> <u>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u> <u>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u> <u>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u> <u>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u> <u>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u> <u>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u>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u>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u> <u>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u> <u>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우</u> <u>편송달하는 경우 지방세로</u> <u>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u> <u>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u> <u>우편으로 하고 30만원 이상</u> <u>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u> <u>다.</u>	○ 30만원 미만 일반우편으로 발송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신 설></u>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주민세 재산분 신설에 따른 감면 신고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0조(세율) ①<u>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개인</u> 가. <u>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u> <u>주소가 읍·면인자 : 3,000원</u> <u>주소가 동인자 : 4,500원</u> 나. <u>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u> <u>50,000원</u> 2. <u>법인의 표준세율</u>	제20조(세율) ①<u>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개인</u> 가. <u>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u> <u>읍·면지역 : 3,000원</u> <u>동지역 : 4,500원</u> 나. <u>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u> <u>50,000원</u> 2. <u>법인</u>	○ <u>균등할주민세</u> 명칭 변경으로 문구 변경 - <u>균등할주민세</u> → <u>주민세 균등분</u>																								
<table><tr><th>구분</th><th>세액</th></tr><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td>500,000원</td></tr><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td>350,000원</td></tr><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td>200,000원</td></tr><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td>100,000원</td></tr><tr><td>기타 법인</td><td>50,000원</td></tr></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table><tr><th>구분</th><th>세액</th></tr><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500,000원</td></tr><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350,000원</td></tr><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200,000원</td></tr><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100,000원</td></tr><tr><td>그 밖의 법인</td><td>50,000원</td></tr></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신 설>	②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삭 제>	○ 소득할주민세 폐지 및 주민세 재산분 신설에 따른 세율 규정 신설 ○ 주민세재산분 중과규정(구 재산할사업소세 중과 규정) ○ 소득할주민세 폐지에 따른 삭제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이 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u> <u>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u> <u>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u> <u>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u> <u>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u>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 <u>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 <u><신 설></u>	<u>제21조의2(신고의무) ①재산</u> <u>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u> <u>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u> <u>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u> <u>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u> <u>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u> <u>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u> <u>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에</u> <u>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u> <u>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u> <u>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 주민세 재 산분 납세 의 무 자 의 신 고 의 무 규 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 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다만, 「경상북도세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삭 제>	○ 소득할주민세 폐지에 따른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u> <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 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u>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 <u>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u>	<u><삭 제></u>	○ 소득할주민세 폐지에 따른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u> <u>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u> <u>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u>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설						
<신설>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적용자 신고 의무 신설						
<신설>	제22조의4(세율) ①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r> <td>소득세분</td> <td>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법인세분</td> <td>법인세액의 100분의 10</td> </tr> </table> ②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신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제27조(세율)① 생략 1.~ 2. 생략 3. 주택 가. 생략 나. 가목이외의 주택 <table>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r> <td>4,000만원이하</td> <td>1,000분의 1.5</td> </tr> <tr> <td>4,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td> <td>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 의3</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4만원 + 1억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5</td> </tr> </table>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 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 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 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 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u>교통 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자</u>(「<u>교통 세법</u>」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 의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5	제22조의5(신고의무) ①종업 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 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 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7조(세율)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이외의 주택 <table>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r> <td>6,000만원 이하</td> <td>1,000분의 1</td> </tr> <tr> <td>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 1.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19만5천원 + 1억5 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57만원 + 3억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 4</td> </tr> </table>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 ----- ----- ----- ----- <u>교통·에너 지·환경세</u> ----- (「<u>교통·에 너지·환경세법</u>」 ----- -----.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 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 4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변경사항 신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주 택분 세율 변경 ○ 관련 법령 명칭변경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 의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5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 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 4																			

[illegible]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	<삭 제> <삭 제>	○ 농업소득세 폐지 ○ 농업소득세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농개시일·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u> <u>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u> <u>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u> <u>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u>	<u><삭 제></u> <u><삭 제></u>	○ 농업소득세 폐지 ○ 농업소득세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u> <u>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u> <u>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u> <u>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 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u>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u><과세표준></u> <u>400만원이하</u> <u>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u> <u>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u> <u>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u> <u>8,000만원초과</u> <u><세 율></u> <u>과세표준액의 100분의3</u> <u>12만원 + 400만원초과금액</u> <u>의 100분의 10</u> <u>72만원 + 1천만원초과금액</u> <u>의 100분의 20</u> <u>672만원 + 4천만원초과금액</u> <u>의 100분의 30</u> <u>1천872만원 + 8천만원초과</u> <u>금액의 100분의 40</u>	<u><삭 제></u>	○ 농업소득세 폐지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삭 제></u>	○ 농업소득세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u>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u> 2. <u>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u> 3. <u>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u> 4. <u>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u> ②<u>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제49조(수시부과) <u>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 제50조(신고와 납부) ①<u>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 기간중의</u>	<삭 제> <삭 제>	○ 농업소득세 폐지 ○ 농업소득세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 <u>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밖에 그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u> <u>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시 관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u> <u>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u>	<u><삭 제></u>	○ 농업소득세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장 목적세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세	<삭 제>	○ 사업소세 폐지
제95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삭 제>	○ 사업소세 폐지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삭 제>	○ 사업소세 폐지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삭 제>	○ 사업소세 폐지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 사업소세 폐지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 사업소세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삭 제>	○ 사업소세 폐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u> 1. <u>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u> 2.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 3. <u>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4.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5. <u>비과세 및 감면사유</u> 6. <u>기타 필요한 사항</u> 부칙<제787호, 2009.5.29>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u>2009년도</u>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제787호, 2009.5.29> 제2조(적용기한) ----- --- <u>2009년도 및 2010년도</u> - ----- -----	○ 도시계획세 세율을 '09년도 세율로 지속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